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침 개정

- '17.8.14(월). 청년취업지원과 -

◆ 추경예산 통과에 따른 변경내용(지원금,인원) 반영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활성화를 위한 시행지침 개정

1 추경에 따른 제도변경사항 및 기 가입자 지원금 상향지급 처리요령

□ 추경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요 변경내용

① (청년·기업 지원금 상향)

- 청년지원 : 2년 600만원 → 900만원 (+300만원 상향)

* (당초) 1개월 50만원, 6개월 100만원, 12·18·24개월 각 150만원

* (변경) 1개월 75만원, 6개월 150만원, 12·18·24개월 각 225만원

- 기업지원 : 참여경로별 상이한 지원금을 상향·통일*하고 청년 적립
강화 (+100만원 상향)

* (종전) 2년 500만원(인턴경로) 또는 600만원(취성패II) [청년에게 300만원 적립]

* (개편) 2년 700만원(인턴, 취성패II 공통)으로 상향 [청년에게 400만원 적립]

↳ 일학습병행제는 추경 통과 후에도 여전히 기업 지원금 없음

◆ [참고] 만기공제금 구조

* (종전) 청년 2년 300만원 + 기업 300만원 + 정부 600만원 = 1,200만원

↳ 인턴경로500만원 또는 취성패(II)경로600만원 받아 적립

* (변경) 청년 2년 300만원 + 기업 400만원 + 정부 900만원 = 1,600만원

↳ 인턴·취성패(II) 모두 700만원 지급하고, 이중 400만원 적립

② (지원인원 확대) 추경을 통해 지원인원 신규 5천명* 추가

* 청년인턴 3,000명 + 취성패 1,500명 + 일학습 500명

③ (적용범위) '17년 추가 5천명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 해소 위해 '17 가입자 및 '16 가입자까지 상향된 지원금 적용

□ '16, '17년 기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 상향분 지급 요령
〈상세요령은 [붙임1] 참조〉

- 기 가입했으나 아직 지원금 지급 이력이 없는 경우
(붙임의 Case1과 Case2)에는,
 - 상향된 지원금 지급액에 따라 1회차 분부터 지원금 지급하고, 지급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
 - 기 가입하여 지원금 기지급된 경우(붙임의 Case3)에는,
 - 지침 개정일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유효하게 진행 중인 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행위 없이** 곧바로 차액분 지급
- * 지침 시행일 기준으로 중도해지 (중도해지 신청 및 절차 진행중인자 포함)한 경우는 제도 적용범위 밖에 있어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차액분 지급 하지 않음
- ** '지원금 상향'은 제도변경에 따른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유효하게 제도 참여 중인 자를 전제로 별도의 신청행위 불요(향후 청년공제 약관 일괄변경(중진공 협조) 및 제도변경사항 이메일 고지 등 안내 별도 실시 예정(한고원 협조))

□ 행정사항

- 고용센터는 중진공 지원금 적립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는 '17.8.17.부터 청년·기업 지원금 상향분 지급 개시
 - 8.31까지 관내 추가지급 완료*하고 본부에 결과 송부(~9.4)
- * 개정지침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지원금 지급건에 대한 집행은, 기 가입자에 대한 상향분 지급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후 처리할 것
- * 지원금 상향에 따른 추가지급 대상자 명단 별도 송부
- * 고보시스템 상 채용유지지원금(인턴경로) 또는 고용촉진장려금(취성패경로)은 추가 지급 메뉴에서 사업장 실계좌 지급 뿐만 아니라 가상계좌 적립도 추가 지급 가능 하도록 시스템 개편 완료
- 기 가입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금 상향 지급 관련 이메일 고지 등 별도 안내 요망(한고원 협조)

※ '취성패 I유형' 및 '일학습병행제 경로' 처리요령

○ (문제점) 취성패 I유형 및 일학습병행제 경로 참여 기업은 청년공제 지원금과 무관하게 자부담으로 청년에게 적립 중*인 바,

- 추경 이후 적립구조에 따르면 기업의 자부담이 가중(2년 300→400만원)되어 이에 따른 별도 처리지침 필요

* '취성패 I유형' 채용하여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이 되는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과 무관하게 1년 간 720만원 지원받으며, 청년공제 가입 시 2년 간 300만원 청년에게 기여(적립).
'일학습병행제 경로'도 기업 지원금 없이 자부담으로 2년 300만원 기여

○ (처리방법) 상기 두 유형에 대해서는,

- (신규참여기업) 개정지침 시행일 이후 신규참여*하는 기업은 변경된 적립구조에 따라 2년 400만원의 자부담으로 청년에게 기여하는 조건으로 청년공제 참여해야 함

* 신규참여의 기준시점은 '채용일'로서, 즉 채용일이 개정지침 시행일 이후(지침 시행일 포함)가 될 경우를 의미

- (기 가입기업) 기 가입 기업*에 대한 소급적용은 결국 기업 부담 증가로 이어지며, 당초의 기대에 반하는 부담적 행정행위라는 점 등의 이유로 2년 300만원 납부 틀을 유지

* 따라서, 이 경우 만기공제금은 1,500만원이 됨(본인300+정부900+기업300)

· 다만, 2년 400만원 납부 희망하는 기업이 있다면, 기 납부한 회차에 대한 차액분을 추가 납부한 후, 잔여 회차에 대해서는 상향된 지원금 구조에 따라 납부해야 함

* 해당 기업은 [붙임2]의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plan.or.kr)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중진공에 제출

2 청년공제 참여경로 확대

□ (현 행) 3개 참여경로(인턴(1~3개월), 취성패, 일학습병행제)를 통해서만 청년공제 가입 가능, 아래 경우는 불가

① 청년*을 인턴기간 없이 정규직으로 바로 채용할 경우

* 취성패 또는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

②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기업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수습(인턴, 수습, 시용, 시보 등 명칭 불문) 중이거나 종료 후

* 취성패 또는 일학습병행제 참여 여부는 관련 없음

<현장의 목소리>

- ❖ 인턴기간 운영 목적은 정규직 취업 제고임에도 바로 정규직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입 불가하고, 오히려 인턴기간을 두는 경우만 가입 가능한 것은 불합리
- ❖ 인턴기간 없이 조기 정규직 취업은 청년에게 이익하게 하는 부분임에도 공제 가입 불가
→ 무조건적인 인턴기간 운영이 아닌 선택적 운영 가능토록 요청
- ❖ 관행 또는 내규에 따라 정규직 채용 후 자체 수습기간을 두는 기업이 적지 않으므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 현장의 상황을 반영해 주길 바람
- ❖ 일정 조건*의 수습기간 운영 시에는 공제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 확대를 바람
* 정규직 신분, 3월 이내 수습기간 운영, 수습기간의 임금수준 청년공제 기준 이상 등

□ (검 토) 일정 요건에 한하여 청년공제 가입 허용방안 마련 필요

① 인턴기간 없이 청년공제 가입 허용에 대해,

- ▲ 기존 인턴제와 달리 청년공제는 정규직 취업청년의 장기근속이 목적인 점,
- ▲ 인턴기간 중 기업지원금이 없어 인건비 목적의 기업 참여 우려가 적다는 점,
- ▲ 인턴기간 없이 바로 정규직 채용은 청년에게 이익한 점 등을 고려,

→ 일정 요건에 한해 청년공제 가입 허용방안 마련 필요

< 청년인턴제 및 청년공제 비교 >

구 분	청년인턴제	청년공제
사업취지	인턴근무 경험을 통한 경력형성 기회 제공 및 정규직 취업 촉진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으로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인턴기간	3개월	최소 1개월 ~ 3개월
인턴기간 중 지원금	(기업) 최대 180만원(월60만원) (청년) 없음	기업, 청년 모두 지원금 없음

② 정규직 채용 후 기업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수습기간에 대해,

- ▲관행 또는 내규에 따라 정규직 채용 후 수습기간을 운영하는 기업의 상황,
▲고용촉진장려금도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수습기간 시작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점,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라도 수습기간 중이란 이유로 무조건 가입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

* 취성패 참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자체 수습기간을 거치더라도,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수습기간부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가능→ 이 경우에도 청년공제 가입 불가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주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의 110% 이상 지급
↳ 수습기간 중 지원요건: 수습기간 최저임금(90%)의 110% 이상→ 즉, **최저임금의 99%이상(최대 3월)**

→ 일정 요건에 한하여 청년공제 가입 허용방안 마련 필요

□ (개 정)

① 3개 경로 외에 아래의 경우에는 정규직 채용과 동시에 청년공제 가입 가능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가입 가능)

- ① 청년친화강소기업(총 1,118개소)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 ② 기타 기업은 고용센터 알선을 통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 위 ①은 “제4의 경로”로 워크넷에 반영할 예정, 기업 지원금은 채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

* 다만, 정규직 채용 후 기업 자체적으로 수습기간을 운영하면서, 수습기간 중에 청년공제에 가입코자 할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수습기간 운영 요건>

- ❖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에 대해 자체 수습기간을 운영하는 경우
* 청년공제 가입 시점은 정규직채용일(= 수습 시작일)
- ❖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
- ❖ 수습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 99%* 이상 지급
* 최저임금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 반영,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의 110% 적용
- ❖ 수습 종료 후 임금은 청년공제 임금지급 기준을 충족
* 최저임금 110% 이상 또는 연장수당 제외한 월 급여총액이 150만원 이상

② 취성패 참여자 정규직 채용 후 기업 자체 수습기간 운영하면서, 수습기간 중 청년공제 가입할 경우에는 위 <수습기간 운영요건>을 충족해야 함

※ '17.1.1.이후 취성패 참여자를 채용하였으나, 자체 수습기간 운영을 이유로 공제 미가입 또는 선발취소한 경우, '17.9.30.까지 가입신청(중진공 청약신청) 허용. 단, 청년본인납입금 소급 납부하여야 함

③ 최소 인턴기간 단축

○ (현행) 최소 1개월, 최대 3개월 → (개정) 최소 2주, 최대 3개월

<참고: 경로별 공제가입 가능 여부 정리>

[공통사항]

- ❖ 청년공제 가입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어야 함
- ❖ 청년공제 가입 신청기업이 정규직이후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수습기간은 3월 이내로 함. 다만, 인턴 및 일학습 경로와 같이 당해 기업에서 일정기간 근무경험을 거친 경우에는 정규직 채용(청년공제 가입) 이후 별도의 추가적인 수습기간을 둘 수 없음

[1경로-인턴]

- ❖ 인턴기간(2주~3개월) → 정규직 전환 동시 청년공제 가입 (○)
- ❖ 인턴기간(2주~3개월) → 정규직 전환 후 수습기간 운영 → 수습기간 시작 또는 종료시 청년공제 가입 (×)
⇒ 인턴제 참여시(인턴기간 수료로 보아 즉시 정규직 취업된 경우 포함)에는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청년공제 가입해야 함

[2경로-취성패]

- ❖ 취성패 참여 → 정규직 채용 동시 청년공제 가입 (○)
- ❖ 취성패 참여 → 비정규직으로 채용 및 수습기간 운영 → 정규직 전환시 청년공제 가입 (×)
- ❖ 취성패 참여 → 정규직 채용 후 수습기간 운영 시 아래 조건 모두 충족시 청년공제 가입 가능
 - ① 청년공제 가입일 : 정규직 채용일(=수습기간 시작일)
 - ②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
 - ③ 수습기간 중 임금은 고촉장려금 지급요건 충족 → 최저임금 99% 이상
 - ④ 수습기간 종료 후 임금은 최저임금 110% 또는 월급여총액 150만원 이상
- ❖ 취성패 참여 → 졸업예정자 정규직 채용 → 졸업일 기준 청년공제 가입 (○)
↳ 정규직 채용 후 수습기간 운영할 경우 위 수습기간 조건 충족해야 함

[3경로-일학습병행]

- ❖ 일학습병행훈련 종료 → 일반정규직근로자 전환 동시 청년공제 가입 (○)
- ❖ 일학습병행훈련 종료 → 일반정규직근로자 전환 후 수습기간 운영 → 수습기간 시작 또는 종료시 청년공제 가입 (×)
⇒ 일학습병행제 종료자는 일반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청년공제 가입해야 함

[4경로(별도의 경로 없음)]

- ❖ 청년공제 가입 조건 (아래 중 1)
 - ① 청년친화강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할 경우
 - ② 청년친화강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고용센터 알선을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 위 ①,②의 경우 청년 및 기업 모두 워크넷-청년공제 사이트에서 참여신청 필수
- ❖ 수습기간 운영 여부에 따른 공제가입
 - ① 정규직 채용 후 수습기간 운영 시, 위 2경로 수습기간 운영요건 충족해야 공제 가입(○)
 - ② 수습기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정규직 채용과 동시에 청년공제 가입(○)

<참고: 참여경로별 청년공제 가입조건 비교>

경로	청년공제 가입일자	청년공제 가입이후 수습인정 여부 및 수습기간	청년공제 참여시 임금조건		기타 추가조건	기업 지원금
1경로 (인턴)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	X	인턴 참여시부터 최저임금 110% 이상 또는 월급여 150만원 이상		기존 지침 준용	채용 유지 지원금
3경로 (일학습)	일학습 종료후 일반근로자 전환일	X	일반정규직전환시 부터 최저임금 110% 이상 또는 월급여 150만원 이상		기존 지침 준용	없음
2경로 (취성패)	정규직 채용일	○ 3월 이내	수습기간 有	고촉장려금 요건 충족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9% 이상* <수습기간 종료 후> →최저임금 110% 이상 등 적용	기존 지침 준용	고촉 장려금
			수습기간 無	고촉장려금 요건 충족 정규직채용시 부터 최저임금 110% 이상 등 적용		
4경로 (-)	정규직 채용일	○ 3월 이내	수습기간 有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9% 이상 <수습기간 종료 후> →최저임금 110% 이상 등 적용	청년친화 강소기업 (직접채용) 또는 고용센터 알선	채용 유지 지원금
			수습기간 無	정규직채용시 부터 최저임금 110% 이상 등 적용		

* 최저임금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에 3월 이내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90%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하므로, 고촉장려금 및 청년공제 가입요건인 최저임금 110% 이상 규정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99% 이상으로 적용함
(즉, 수습기간 최저임금(90%)의 110% 이상 → 최저임금 99%이상(최대 3월))

3 지원금 지급 절차 개선

□ (현 행) 2년 5회 주기별로 청년·기업의 신청(운영기관 대행)을 통해 지원

- 지원주기 : 1월, 6월, 12월, 18월, 24월
- 지원절차 : ①기업→운영기관에 청년·기업 지원금신청서 제출(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첨부), ②운영기관 검토 후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③고용센터 최종 검토 후 청년·기업에 지급

□ (문제점)

① 지원금 신청 지연

- 연 2회 또는 3회 신청, 신청서류 복잡 등 지원금신청이 기업 부담으로 작용
- 지속적인 독려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지연, 예산집행 저조
- * 17.6월말 기준 취업지원금 집행률 6%에 불과

② 청년은 매월 12.5만원씩 적립(자동이체)함에도 기업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청년 취업지원금 및 기업 기여금 미적립되는 사례 발생

→ 연도별 예산 집행 차질(17년 불용 우려 ↔ 18년 집중 신청으로 부족 우려)

□ (개 정)

① 가상계좌로 지급되는 청년 “취업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고용센터에서 워크넷·고보시스템 등을 통해 지원요건*을 확인한 후 매월 10, 20, 30일 3회에 걸쳐 지급(기업지원금 신청은 현행과 동일)

* 워크넷 정보(지원금 미입력 목록), 피보험자격(재직여부), 인위적감원여부 등

- 고용센터는 필요시 운영기관에 취업지원금 대상 목록 요청하고, 운영기관은 자료 요청을 받을 경우, 관련 자료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단, 청년 본인 적립금(월12.5만원) 납입 전제는 필수

* 공제부금 납입확인 기준은 기 안내 공문 참조(청년취업지원과-1875, '17.6.1)

② 근속관리비는 기업 지원금 신청 시 함께 신청 및 고용센터에서 지급

③ 2년 만기시 또는 청년 중도퇴사(중도해지)시에는 취업지원금 지급분 최종 확인을 위해 전체 지원기간 동안의 지원요건, 임금지급내역 등 총괄 검토

□ 운영기관의 역할 보장

- 청년공제 가입자 중도퇴사, 기업의 인위적 감원, 급여대장 확인 등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 관리 및 고용센터에 결과 보고
(고용센터 요구시 또는 근속관리비 신청시)

4 참여제외 업종 정비

□ (현행) 소비·향락업 등 인턴제에 부적합한 다수 업종 참여 제한

- 인턴제 취지*를 고려하여 인턴근무에 부적합한 다수 업종 참여 제외

*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직무경력을 쌓고 정규직 취업 가능성 촉진

< 현행 청년공제 참여 제외 업종 >

- ① 소비·향락업 또는 중기청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부동산업, 비영리 개인(어린이집) 및 법인(의료법인) 등

- ② 근로자파견업* 또는 근로자공급업(용역업체 등 포함**)

* 당해 파견업체내에서의 인턴 또는 정규직으로 근무시키는 경우는 신청 가능

** 소속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 인턴채용불가

- ③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④ 다단계 판매업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사업장 내에서 영업직 외 직원으로 인턴 또는 정규직으로 근무시키는 경우는 가능

- ⑤ 학원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 강사 업무를 제외한 일반 관리직에 근무는 가능

- ⑥ 숙박·음식업*

* 숙박업종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음식업종 프렌차이즈 업체로서 조리 및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본부회사에 근무시키는 경우는 가능

** 숙박·음식업 중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서 일학습병행훈련 과정 수료자를 청년공제에 가입시키는 경우는 가능

- ⑦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⑧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개정) 청년공제 취지에 맞게 참여 제외 업종 정비

- 인턴제는 청년공제 참여경로 중 하나로서 인턴제 제외 업종을 청년공제 제외업종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
-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라는 청년공제 취지를 고려하여 참여제외 업종을 소비·향락업 등 위 ①, ③, ⑦, ⑧으로 규정

5 청년 참여제한 기준 개선

□ (현 행)

- ① (인위적 감원시 제재) 기업의 인위적감원 발생 시 기업 제재*뿐 아니라 감원 직전 채용된 청년공제 참여자(인턴 포함)에 대해서도 지원 중단**
* 감원시부터 감원인원 수만큼 지원금 지급 중단, 감원일로부터 1년간 추가채용 금지
** 인턴은 청년공제 가입 불허, 청년공제 가입자는 중도해지 처리
- ② (참여 제한) 청년인턴제 또는 청년공제의 인턴기간을 수료한 자, 청년공제에 1회 이상 가입한 자

□ (문제점)

- ① (인위적 감원시 제재) 인위적감원은 기업의 귀책사유임에도 이와 무관한 청년에 대한 지원이 중단 될 뿐 아니라, 현재 가입중인 청년공제 중도해지 또는 향후 청년공제 재가입 불가 등 청년에 대한 불이익이 큼
→ 지원중단 또는 재가입 불가로 청년의 민원 발생 및 재참여 요구 다수
- ② (재참여 제한) 인턴기간만 수료한 자 또는 기존 청년인턴제 참여자는 청년공제 혜택이 전혀 없었음에도 청년공제 참여 제한 등 청년에 대한 불이익이 큼
→ 청년공제 재참여 불가로 청년의 민원 발생 및 재참여 요구 다수

□ (개 정)

① 청년공제 가입중인 청년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인위적감원 발생 시 제재는 기업으로 한정

- (기업 제재) 1)감원시부터 감원인원 수만큼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되, 기업에 대한 지원만 중단, 2)감원일로부터 1년간 인턴 추가 채용 및 청년공제 가입 금지
- (청년) 인턴 참여중 또는 청년공제 가입중인 청년은 본인 희망시 계속 지원
* 기업기여금 지원 중단되고, 이후에는 정부지원금만 적립됨. 2년 만기 도래시 이미 적립된 기업기여금은 환수하여,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최대 1,200만원임

② 참여 제한 대상 개선

- (참여 제한) 청년공제 1회 이상 가입한 자
- (참여 허용) 기존 청년인턴제 참여자(참여형태 불문), 청년공제 인턴 중도탈락자, 청년공제 인턴수료자, 청년공제 정규직 전환(채용) 후 청년공제 미가입자, 청년공제 계약취소자(계약일로부터 1월 이내)는 참여 허용

6 기타 개정 사항

구분	개 정 내 용	비고
p9 1-1-1. 인턴제 참여자격	1-1-1. 인턴제 참여자격 (개정전) 가. 인턴 신청일 현재 만 15~34세 이하의 자로서 미취업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가입기간이 연속하여 1년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다. (별표 중략) ①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자 ② 고등학교·대학·대학원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 ③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중인 자 ④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청년친화강소기업, 일학습병행기업 또는 체계적 현장훈련기업에 인턴으로 참여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삭제) 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 1년 이상이어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최종 학력 고졸이하 또는 대학 휴학생·졸업예정자 -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상용일 기준, 일용근로내역 제외)로부터 실직기간 3개월 이상인 자 - 취업패 유형 참여 가능 청년	정규직취업 청년의 장기근속취지 및 사업활성화를 고려하여, 고졸예정자 참여 기업 범위 완화,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실직기간 기준 명확화(일용기간 제외)
p10~11 1-1-2 청년공제 참여자격	가.(참여연령) '만35~39세이나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참여가능' 조항 삭제 다.(취성패) 취성패 참여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으로서, 정규직 취업(채용)일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및 관련규정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 이어야 함. 다만, 졸업예정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졸업일(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일)을 기준으로 청년공제 가입 가능 *고촉장려금 지급요건은 관련법령 및 지침 참조 라.(일학습병행제) <별표 추가> **일학습병행 훈련을 시작할 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도 포함	병역근무시에만 연령 변동 -고촉장려금 지급 대상자이어야함을 명확히 규정 -졸업예정자 공제 가입 기준 추가
p11 인턴제 및 청년공제	가. 인턴제 및 청년공제 참여대상 제외자 (개정전) ① 인턴제에 참여하여 인턴기간을 수료한 자 또는 청년	i) 기존 청년인턴제 참여자(인턴중 중도 탈락 인턴수료 정규직 전환자, 지원금지급

구분	개 정 내 용	비고
참여제한	공제에 1회 이상 가입한 자 - 다만, 인턴기간 중 중도해지된 경우 1회에 한해 재 참여 가능 (개정후) ① 청년공제에 1회 이상 가입한 자 ②~⑥(병역특례근무중인자, 외국인 생략 등) 생략	여부 등 불문), ii)청년 공제 인턴 중도탈락자 iii)청년공제인턴수료자 iv)청년공제 정규직 전환(채용) 후 청년 공제 미가입자 v)청년 공제 계약 취소자 (계약일로부터 1월 이내)'는 참여 제 외자에서 제외
p13~14 20, 25 교육관련	○ 교육관련 아래 조항 삭제 - 1-4. 사전직무교육 및 워크넷온라인교육 이수(p13~14) - 2-4. 교육이수(공통 적용)(p20) → 취업지원금 신청시 온라인교육 수료증 제출 불필요 (기 안내 완료, 청년취업지원과-2196,'17.7.3.) ○ 교육관련 운영기관 의무조항에 내용 추가(p25) 3-3. 운영기관의 의무 마. 운영기관은 청년공제 참여가 확정된 청년과 기업에게 인턴제 및 청년공제 개요, 공제부금 적립 및 지원금 신청, 만기시 수급방법, 지원금 환수사항 및 부정수급 등 청년공제 지침의 중요사항 등을 운영기관의 자율적인 방법으로 안내한다. * 청년·기업의 확인, 교육일지 작성 및 증빙제출 등 불필요	○ 기존 인턴제 취지의 교육이수 조항은 삭제하고, 운영기관의 자율적 방법으로 청년공제 중요 사항 안내토록 규정 신설
p15 2-1.기업 참여자격	가. 청년공제 참여기업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포함)과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사용하는 기업으로 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기업 등은 제외 **피보험자수는 최초 청년공제지원협약 체결시 피보험자수로 하되, <u>사업주, 일용근로자, 채용예정인 청년인턴 또는 청년공제 참여자는 제외</u>되고, 여러 운영기관과 체결시 최초 체결일을 기준으로 함 → p9,15,17,40등 상시근로자 개념을 변경 적용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별표 1」 참조 (내용 추가) ○ 1인 이상 5인 미만 참여 가능기업 추가 ⑦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통해 창업한 기업, --(중략)--,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참여대상기업을 우선지원대상으로 변경, 고보시스템을 통해 기업참여 자격확인 가능 단, 2년 만기후 중기청 내일채움 공제와의 연계를 고려, 중기법상 중소기업 비해당되는 비영리기업은 제외
	중진공 운영하는 "청년창업 CEO양성 과정"을 졸업한 기업 추가	

구분	개 정 내 용	비고
p16 소비향락업 또는 중·청 내일공제 가입 제외 업종 보완	①소비향락업 및 중기청 내일공제 제외업종 <참고> ▶소비·향락업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 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중기청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 제외대상 i)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ii) 비영리 법인, 단체, 조합, 협회(단,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은 참여 가능):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 중소기업 범위해설(중소기업청 발행, 2015) 참조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가입제외업종 명확히 규정
p17 참여제한	○취성패 참여자 채용기업 참여제한 규정 추가 ⑥취성패 참여자 채용기업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제한 규정에 따라 참여를 제한한다	문서(청취과-1875,17.6.1.)참조
p18~19 마. 인턴 채용 또는 공제가입 제외대상	마. 기업은 다음 각 호 해당자를 인턴채용 또는 청년공제에 가입시킬 수 없다. ① 당해 기업에 채용되어 실제 근무중이거나 근무했었던 자 → 인턴 또는 취성패 참여자 채용기업 모두 해당 (병역특례로 근무한 자 포함) → 괄호 삭제 - 인턴제 실시기업은 당해 기업에서 근무(상용) 했었던 자를 당해 기업의 최종 이직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이후 인턴으로 채용 및 정규직 전환 후 청년공제 가입 가능 - 단, 취성패 참여자 채용기업의 근무했었던 자 재채용 기준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름 ②기업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단, 취성패 경로를 통한 청년공제 가입자의 경우에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외 대상자	① 조항: 인턴제 및 취성패 모두 해당 -(괄호)내용은 p12② 병역특례 종료자 공제가입 가능 조항과 상충 -단서 조항 보완 → '일용, 단시간' 삭제 등 ○인턴, 일학습→ 배우자 조항 추가 ○취성패→고촉 장려금요건충족해야함을 명시

구분	개 정 내 용	비고
p35 인턴기간	나.청년(인턴)의 근로조건 ○(인턴기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3개월 이내에서 자율로 정하되, 최소 2주 이상 이어야 한다	기간 단축 및 월단위 문구 삭제
p35 인턴 근무지	○(근무지) 내용 변경 - 실시기업은 인턴근무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인턴근무지를 인턴운영계획서에 사전 명시 하여야 한다.	청년공제 취지를 고려, 인턴근무지에 대해서는 자율성 허용
p36 인턴급여	○ ---- 매월 지급할 총액이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110% 수준 이상이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총액이 150만원(17년 주40시간 기준) 이상 이 되어야 한다	급여조건 기준 명확화
p37 p41 재정지원 일자리사 업 중복 참여금지	마. 기타 / 2-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 인턴제(청년공제)에 참여중인 자가 희망근로사업, 디딤돌 일자리사업, 사회적 일자리사업 등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에 참여해서는 아니된다. - 인턴제(청년공제)에 참여중인 청년을 다른 직접일자리사업 에 참여토록 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중도해지)하며, 향후 인턴제 및 청년공제 참여자격을 배제한다. - 기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의 중복 및 반복참여에 관련해서는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다.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일자리사업현황 별도 공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직접’ 일 자 리 사 업 에 중복참여 금지 규정 명확화 워크넷에 리스트 공지 예정
p38 2-3-1. 지원협약	2-3.취성패 참여자 채용기업(실시기업)의 지원협약 2-3-1. 지원협약 가.(협약체결) → 내용추가 ○다만, 하나의 실시기업이 2명 이상의 취성패 참여 청년을 채용하면서 각 청년의 해당 운영기관이 달라 2개 이상의 취성패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을 체결해야 할 경우, -기업이 대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알선 및 채용, 자격검토, 운영관리 등을 제공받기를 원한다면, 관련 운영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운영기관 1개소와 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기업이 다수의 취성패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

구분	개 정 내 용	비고
p41. 2-7. 정 규 직 채 용 · 전 환통보 p44, 45, 46, 54	2-7.정규직 채용·전환 통보(내용 추가) 가. 인턴제 실시기업은 정규직 전환(채용)일까지 (중략) 「정규직 채용자명단 통보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 여야 하고 (이하 생략) 나. 취성패 또는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채용기업은 정규직 채용(일반 근로자 전환)일 전후 30영업일 이내에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 여야 함(신설) →p44,45,46,54의 제출일도 변경 적용 나. 정규직 전환·채용자의 임금수준 -(인턴 경로) 인턴기간 중 지급한 급여 이상 지급해야 함 -(취성패·일학습경로) 급여 수준은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되, 상여금(분할지급 횟수 불문), 가산임금, 생활보조적·후생복지 금품(식비, 교통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을 제외하고 매월 지급할 총액이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110% 수준 이상이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총액이 150만원 이상(17년 주40시간 기준)이 되어야 한다.	○취성패·일학습 참여자의 워크넷 참여신청 기한연장 (정규직채용일 전후 30영업일) 반영 ○정규직 전환· 채용자의 임금 수준 기준 명시화
p41. 2-8. (신설)	2-8. 청년공제 가입 청년에 대한 임금 지급 ○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청년에 대한 임금을 공제 가입 및 지원금 수령 등을 이유로 청년공제 가입 하지 않은 다른 동일한 근로조건의 청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p41. 2-9. (신설)	2-9. 청년공제 가입 관련 안내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청년공제 가입과 관련 청년· 기업과의 상담(알선, 채용, 청약신청 등) 및 안내 시, 전반 적인 청년공제 사업내용 뿐 아니라, 특히, 참여자격, 참여제한, 부정수급시 제재, 납입중지, 중도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p43 청약승낙 기한 및 안내	3-2-1. 청약 신청 개요(공통적용) 나. 중진공은 청약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청년 공제 승낙여부를 결정하여 실시기업과 청년, 고용 센터에 통보하며, 불승인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결과를 함께 통보한다.	○승낙 처리기간 연장 7→15 영업일 ○납입중지 등 청약 관련사항 안내 규정

구분	개 정 내 용	비고
	다. 중진공 은 청약신청 시, ‘계약 취소, 납입중지, 중도 해지, 미납시 처리, 만기공제금 지급’ 등 청약관련 사항을 해당 청년 및 기업에 안내하여야 한다.	
p48 납입중지	3-3. 납입중지 (세부내용 추가) 가. 납입중지 사유 ○청년(핵심인력)이 아래 사유로 공제부금을 납입할 수 없을 경우 납입중지 ①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근무 포함) 이행, ②육아휴직, ③업무상 재해, ④개인질병, ⑤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위 사유가 종료되지 않을 시에는 중지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동 중지기간 만큼 가입기간은 연장됨(삭제) 나. 납입중지 기간 - ①~②; 해당 기간 - ③~⑤ 최대 6개월까지 다. 신청에 의한 납입중지 절차 - 위 납입중지 사유 발생시, 청년과 실시기업은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납입 중지 신청한다. - 중진공은 중지신청 접수된 즉시 (이하 생략) --- 라. 직권에 의한 납입중지(신설) - 고용센터에서 납입중지 사유를 먼저 확인하게 된 경우에는 청년 및 실시기업에 납입중지 신청해야 함을 안내하고, 중진공에도 중지사유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 고용센터는 청년 및 실시기업에 납입중지 신청을 안내했음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중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직권으로 중진공에 납입중지를 신청하고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납입중지 사유, 기간, 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청년공제 가입기간이 2년인점, 납입중지기간 연장시 사업관리 기간이 최대 4년 까지 이르는 점, 예산 편성 및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납입중지 최대기간을 6월로 한정 → 공제가입 최대기간 2년6개월 ○중지기간 연장 조항 삭제 ○①~③사유 의 6개월초과 납입 중지 및 중도해지시에는 추후 재참여 허용 ○직권에 의한 납입 중지 조항 신설
p49 청년공제 청약철회 신설 및 계약취소	3-4. 청년공제 청약 철회(신설) ○실시기업 또는 청년은 계약의 성립일 이전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에서 청약 철회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중진공에 청약철회 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가입 자격 미달 등 공제가입 대상이 아닌 자의 청년공제 청약 철회 개념 규정

구분	개 정 내 용	비고
	○청약철회 신청절차는 중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5. 청년공제 계약 취소(내용 수정) ○실시기업 또는 청년은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에서 계약 취소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중진공에 계약 취소 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 취소 신청절차는 중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청년공제 계약을 취소한 청년(핵심인력)은 청년공제에 참여 할 수 있다.	○ 취소 개념 규정 ○ 계약취소자의 공제 재참여 허용
p50 취업지원금 지원조건	1-2. 지원조건(내용 추가) ○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의 임금은 인턴 기간 중 지급 받은 급여 이상으로 지급 받아야 한다.	채용유지지원금 지원조건과 동 일하게 규정
p59 중도해지	나. 해지절차 ○ 중도해지 사유 발생시, 청년과 실시기업은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중도 해지 신청한다. (이하 생략) 다. 직권에 의한 중도해지(신설) - 고용센터에서 중도해지 사유를 먼저 확인하게 된 경우에는 청년 및 실시기업에 중도해지 신청해야 함을 안내하고, 중진공에도 해지사유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 고용센터는 청년 및 실시기업에 중도해지 신청을 안내했음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도해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직권으로 중진공에 중도해지를 신청하고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 직권에 의한 중도해지 조항 신설
p60 중도해지 환급금	4. 해지 시기별 중도해지 환급금(내용 수정 및 추가) ○ (기업 기여금) 24개월 이전 중도해지시 전액 정부 환수 다만, 실제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환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기업 순지원금) 중도해지한 경우라도 이미 중도해지 이전까지 지급한 기업 순지원금은 환수하지 않는다. ○ (취업지원금)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하되, 18개월 이상	○ 미지급기여금에 대한 별도의 지급-환수 절차 생략 가능 ○ 중도해지 시 기업 순지원금 지급 또는 환수 여부 명확화

구분	개 정 내 용	비고
	근무 후 중도해지 시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차등 지급	○ 취업 지원금 지급기준명확화
p69 운영기관의 기업 지 도점검	3-1. 운영기관의 현장지도·점검 가. 운영기관은 --- (중략) --- 실시기업에 대해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지도·점검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당해년도 청년공제 실시기업의 50%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아래 사업장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①10인 미만 사업장, ②18세 미만자 채용 사업장, ③기타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등	○ 점검 대상 및 규모 명확화 예) 17년 최초 공제 시작한 기업은 최초 참여연도(17년)부터 정산시(19년 또는 20년)까지 점검대상이 됨 ○ 필수 점검대상 기업에 신규실시기업 제외 - 17년 청년공제 본격 시행 및 취성패·일학습병행기업은 올해 모두 신규실시기업인 점 등 고려
p70 고용센터 현장점검	3-2. 고용센터의 현장점검 나. 운영기관 점검 - 고용센터는 관내 인턴제 운영기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실시기업 점검 - (대상) “워크넷-청년공제” 전산시스템의 부정수급 예방관리 정보에 등록된 기업, 부정수급 제보업체, 기타 부정수급 의심사업장, 그 외 센터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업종·규모별로 점검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 (규모) 연간 청년공제 전담자 1인당 10개소 이상으로 하되, 참여경로(인턴,취성패,일학습)에 따라 점검대상 기업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방법) 고용센터 단독 또는 합동(운영기관)으로 실시라. (생략)	고용센터의 실시 기업 현장점검 기준 명확화
p72 인턴제 운영기관 평가지표	○ (정량평가) 표 안의 평가기준 수정 - 강소기업 등 취업실적(5점): 매년 10월말 기준으로 운영기관에서 강소기업 또는 일학습병행제를 통한 실시기업에 취업시킨 실적	개념 명확화

구분	개 정 내 용	비고
p81~82	<별첨 5> 위반행위 유형별 제재기준 → 내용 수정 보완	
서식 변경	서식18 취업지원금/근속관리비 신청서 분리 서식19 채용유지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분리	개정서식 추후 통보

7 행정사항

< 개정 지침 적용 >

① 지원금 상향 규정

- 고용센터는 중진공 지원금 적립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는 '17.8.17.부터 청년·기업 지원금 상향분 지급 개시

- 8.31까지 관내 추가지급 완료*하고 본부에 결과 송부(~9.4)

- * 개정지침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지원금 지급건에 대한 집행은, 기 가입자에 대한 상향분 지급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후 처리할 것

** 지원금 상향에 따른 추가지급 대상자 명단 별도 송부 예정

②~⑥ 규정: '17.8.14.(개정일) 이후 채용자부터 개정 지침 적용·시행

- * 다만, 취성패 참여자 수습기간 허용에 따른 소급 신청기한은 '17.9.30.까지 중진공 청약신청자에 한함.

◆ 지원금 지급구조 변경

- 청년지원 : 2년 600만원 → 900만원 (+300만원)
 - * (당초) 1개월 50만원, 6개월 100만원, 12·18·24개월 각 150만원
 - * (변경) 1개월 75만원, 6개월 150만원, 12·18·24개월 각 225만원
- 기업지원 : 참여경로에 따라 상이한 지원금을 상향 통일
 - * (당초) 2년 500만원(인턴경로) 또는 600만원(취성패II) [청년에게 300만원 적립]
 - * (개편) 2년 700만원(인턴, 취성패II 공통)으로 상향 [청년에게 400만원 적립]

◆ 적용범위

- 가입자 간 형평성 해소를 위해, ▲지침 시행 이후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17년 기존 가입자 및 ▲'16년 가입자까지 소급 적용

□ [Case1] 개정지침 시행일 이후(시행일 포함) 신규 참여자

- 상향된 지원금 지급 구조*에 따라 1회차분부터 상향 지급
 - * (청년) 1회 75만원, 2회 150만원, 3·4·5회 225만원
 - * (기업) 1회 70만원(45 적립), 2회 120만원(70 적립), 3·4·5회 170만원(95 적립)

※ [도식화] -----+-----+-----+-----+-----+-----+----->
 지침시행일 참여(워크넷 신청) 청약가입 지원금 지급(상향적용)

□ [Case2] 개정지침 시행일 이전 참여자로서, 지원금 미지급자

- ①지침 시행일 이전에 워크넷 참여까지만 하였거나, ②참여 후 청년 공제 가입(청약신청) 및 승낙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1회차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위와 동일하게 1회차분부터 상향 지급

※ [도식화] -----+-----+-----+-----+-----+-----+-----> 또는
 참여(워크넷 신청) 지침시행일 청약가입 지원금 지급(상향적용)
 ※ [도식화] -----+-----+-----+-----+-----+-----+----->
 참여(워크넷 신청) 청약가입 지침시행일 지원금 지급(상향적용)

□ [Case3] 개정지침 시행 이전 참여자로서, 지원금 기지급자

※ 사례별 지원금 지급 방식 요령은 다음페이지 참조

- '16년(인턴경로)과 '17년 참여자 중 지원금이 1회 이상 기지급된 청년 및 기업을 대상으로 상향된 지원금을 지급하는 요령 안내 필요

- ① 기 지급된 회차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차액분 일괄지급하고,
(청년·기업 지원금 모두 지급)

② 미 지급된 회차는 상향된 지급구조에 따라 회차별 지급시기 도래에 따라 지원금 순차 지급

※ [도식화] 1회차만 지급한 경우,

-----+-----+-----+-----+-----+-----+-----+-----+----->
참여(워크넷 신청) 청약가입 1회차 지급 지침시행일 (차액분지급) 2회차 지급(상향지원금)

※ [도식화] 2회차까지 지급한 경우,

-----+-----+-----+-----+-----+-----+-----+-----+----->
참여(워크넷 신청) 청약가입 1회차 지급 2회차 지급 지침시행일 (1·2회차 차액분지급) 3회차 지급
(상향지원금)

◆ Case 3에 따른 세부 지급방식

- (예시1) '17년 인턴경로 참여하여 1회차분 지급된 경우,

· (취업지원금) 1회차 차액분 25만원(50→75만원)을 청년 가상계좌로 지급
· (채용유지지원금) 1회차 차액분 20만원(50→70만원)을 기업 가상계좌로 지급
(기업지원금 상향분 모두 청년에게 최종 적립하게 됨)

→ 이후 2회차 부터는 상향된 지급구조에 따라 회차별 지원금 지급

- (예시2) '17년 인턴경로 참여하여 1, 2회차분 지급된 경우,

· (취업지원금) 1회차 차액분 25만원(50→75만원)과 2회차 차액분 50만원(100→150만원)을
합한 총 75만원을 청년 가상계좌로 일괄지급

· (채용유지지원금) 1회차 차액분 20만원(50→70만원)과 2회차 차액분 45만원(75→
120만원) 중 20만원을 합한 총 40만원을 기업 가상계좌로 일괄 지급

- 2회차 차액분 45만원(75→120만원) 중 나머지 25만원은 기업 실제좌로 지급

→ 이후 3회차 부터는 상향된 지급구조에 따라 회차별 지원금 지급

- (예시3) '17년 취업패(II) 참여하여 1회차분 지급된 경우,
 - (취업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예시1)과 동일
 - 이후 2회차 부터는 상향된 지급구조에 따라 회차별 지원금 지급
- (예시4) '17년 취업패(II) 참여하여 1, 2회차분 지급된 경우,
 - (취업지원금) (예시2)와 동일
 - (고용촉진장려금) 1회차 차액분 20만원(50→70만원)과 2회차 차액분 20만원(100→120만원)을 합한 총 40만원을 기업 가상계좌로 일괄 지급
 - 이후 3회차 부터는 상향된 지급구조에 따라 회차별 지원금 지급
- (예시5) '16년 인턴제 참여하여 1회차분 지급된 경우,
 - (취업지원금) (예시1)과 동일
 - (정규직전환지원금) 1회차 차액분 45만원(25→70만원) 중 20만원은 기업 가상계좌로 지급, 25만원은 기업 실계좌로 지급
 - 이후 2회차 부터는 상향된 지급구조에 따라 회차별 지원금 지급
- (예시6) '16년 인턴제 참여하여 1, 2회차분 지급된 경우,
 - (취업지원금) (예시2)와 동일
 - (정규직전환지원금) 1회차 차액분 45만원(25→70만원) 중 20만원과 2회차 차액분 70만원(50→120만원) 중 20만원을 합한 총 40만원을 기업 가상계좌로 일괄 지급
 - 1회차 차액분 45만원(25→70만원) 중 25만원과 2회차 차액분 70만원(50→120만원) 중 50만원을 합한 총 75만원을 기업 실계좌로 지급
 - 이후 3회차 부터는 상향된 지급구조에 따라 회차별 지원금 지급

< [참고] 사업년도 및 참여경로별 지원금 변경 내역 >

□ '16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 (인턴경로만 존재)

		소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정부→청년 (취업지원금)	당초	600만원	50	100	150	150	150
	변경	900만원 (+300)	75 (+25)	150 (+50)	225 (+75)	225 (+75)	225 (+75)
정부→기업 (정규직전환 지원금)	당초	(‘16 인턴) 390만원	25	50	75	75	165
		기여금 300	25	50	75	75	75
		순지원금 90	0	0	0	0	90
	변경	700만원	70	120	170	170	170
		기여금 400 (+100)	45 (+20)	70 (+20)	95 (+20)	95 (+20)	95 (+20)
		순지원금 300 (+210)	25 (+25)	50 (+50)	75 (+75)	75 (+75)	75 (+75)

□ '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

○ 청년인턴 경로

		소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정부→청년 (취업지원금)	당초	600만원	50	100	150	150	150
	변경	900만원 (+300)	75 (+25)	150 (+50)	225 (+75)	225 (+75)	225 (+75)
정부→기업 (채용유지 지원금)	당초	(‘17인턴) 500만원	50	75	125	125	125
		기여금 300	25	50	75	75	75
		순지원금 200	25	25	50	50	50
	변경	700만원	70	120	170	170	170
		기여금 400 (+100)	45 (+20)	70 (+20)	95 (+20)	95 (+20)	95 (+20)
		순지원금 300 (+100)	25 (-)	50 (+25)	75 (+25)	75 (+25)	75 (+25)

○ 취성패 경로 (II유형)

		소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정부→청년 (취업지원금)	당초	600만원	50	100	150	150	150
	변경	900만원 (+300)	75 (+25)	150 (+50)	225 (+75)	225 (+75)	225 (+75)
정부→기업 (고용촉진 장려금)	당초	(‘17취성패II) 600만원	50	100	150	150	150
		기여금 300	25	50	75	75	75
		순지원금 300	25	50	75	75	75
	변경	700만원	70	120	170	170	170
		기여금 400 (+100)	45 (+20)	70 (+20)	95 (+20)	95 (+20)	95 (+20)
		순지원금 300 (-)	25 (-)	50 (-)	75 (-)	75 (-)	75 (-)

○ 취성패 경로 (I유형)

		소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정부→청년 (취업지원금)	당초	600만원	50	100	150	150	150
	변경	900만원 (+300)	75 (+25)	150 (+50)	225 (+75)	225 (+75)	225 (+75)
기업 * 추경 이후 신규참여에 한함	당초	(‘17취성패I) 300만원	25	50	75	75	75
		기여금 (자부담) 300	25	50	75	75	75
		순지원금 0	0	0	0	0	0
	변경	400만원	45	70	95	95	95
		기여금 (자부담) 400 (+100)	45 (+20)	70 (+20)	95 (+20)	95 (+20)	95 (+20)
		순지원금 0	0	0	0	0	0

○ 일학습병행제 경로

		소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정부→청년 (취업지원금)	당초	600만원	50	100	150	150	150
	변경	900만원 (+300)	75 (+25)	150 (+50)	225 (+75)	225 (+75)	225 (+75)
기업 * 추경 이후 신규참여에 한함	당초	(일학습) 300만원	25	50	75	75	75
		기여금 300	25	50	75	75	75
		순지원금 0	0	0	0	0	0
	변경	400만원	70	120	170	170	170
		기여금 400 (+100)	45 (+20)	70 (+20)	95 (+20)	95 (+20)	95 (+20)
		순지원금 0	0	0	0	0	0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상향 관련 안내사항

□ 만기공제금 상향

- '17년 추경에 따라, 만기공제금이 2년 1,200 → 1,600만원으로 상향(400만원 ↑)

- (청년 납입금) 2년 300만원 (변동없음)

- (취업지원금) 2년 600만원 → 900만원 (300만원 ↑)

구 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계
종전(a)	50	100	150	150	150	600
변경(b)	75	150	225	225	225	900
차액(b-a)	25	50	75	75	75	300

- (기업기여금) 2년 300만원 → 400만원 (100만원 ↑)

구 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계
종전(a)	25	50	75	75	75	300
변경(b)	45	70	95	95	95	400
차액(b-a)	20	20	20	20	20	100

□ 시행일 : 2017.8.14

- 시행일 이후에 신규로 채용한 경우 적용
- 시행일 이전에 채용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
 - 다만, 참여유형 중 취성패 I 유형과 일학습병행제의 기업기여금은 해당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급 적용

* 16년도 취성패 II 참여자로서, 기업이 직접 기업기여금을 납부하는 경우 포함

□ 기업기여금 변경 신청

- (신청 방법) 첨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메일(sbcplan0@sbc.or.kr) 또는 팩스(055-756-7909)로 제출
- (납부 방법) 납부일정에 따라 상향된 금액으로 자동 출금되며, 기 납부 금액이 있는 기업은 별도로 지정한 납부일에 차액분 일괄 자동 출금

기업기여금 납부금액 변경 신청서

기업 정보			
사업장명		지사(지점)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명		연락처	

핵심인력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정규직 채용일	연락처

납부금액 변경신청			
변경 전	금 삼백만 원	변경 후	금 사백만 원
공제부금 기 납부회수		차액분 납부액	금 원
차액분 납부희망일	20 . . (신청서 제출일 10일 이후 날짜로 신청)		

* 차액분 납부액 예시 : (1회 납부자) 20만원 (2회 납부자) 40만원

위와 같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부금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명

직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69)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200명 이하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00명 이하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